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를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제가목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제4호 본문에 “장기재직자”를 “공무원”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9급 국가직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21.8대 1에 그쳤으며, 5년 미만 저연차 국가공무원의 퇴직공무원의 수는 2019년 기준 6,663명에서 2022년 1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퇴직 원인으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추세임.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의자: 000 의원

1.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는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기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다음 각 목과 같이 특별휴가”를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직기간별 일정 일수의 휴가”로, “있으며,”를 “있으며, 그”로 하고, 같은 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휴가) ①·② (생략)</p> <p>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4. 의장은 <u>장기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다음 각 목과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u> <u>한 공무원: 5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u> <u>한 공무원: 10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u> <u>한 공무원: 20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u> <u>30일</u></p> <p><신설></p> <p>5.·6. (생략)</p>	<p>제8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직기간별 일정 일수의 휴가-----</u> <u>있으며, 그 -----</u>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u> <u>만: 3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u> <u>미만: 5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u> <u>미만: 10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u> <u>미만: 20일</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u></p> <p>5.·6. (현행과 같음)</p>